

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2024 인천시민안전보험

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?

- ▶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·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

보험개요

- ▶ 보장대상 :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 외국인 포함)
- ▶ 보장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 (매년 갱신) * 2019년부터 시행 중
- ▶ 보험료 :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
- ▶ 가입절차 :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

보장내용 (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)



자연재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

자연재해로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 사망한 경우 1,300만원
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 (24년 신규)


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

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당금을 받은 경우
(1급~5급) 1,500만원 한도 (만12세 이하 대상)



폭발, 화재,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

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



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

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


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

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(전세버스 제외)
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(전세버스 제외)



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

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



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

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



사회재난 사망

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
※ 사망보장은 만15세 이상,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이하 대상
※ '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은 1,000만원, '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0만원

보험금 청구 ※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

- ▶ 청구권자 : 피공제자(피해자) 직접청구 원칙(단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, 사망은 법정상속인)
- ▶ 문의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(☎ 1577-5939)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 ☎(032)120
- ▶ 청구서식 : 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기타 구비서류 등
 - 한국지방재정공제회(www.lofa.or.kr) ⇨ 정보마당 ⇨ 규정 및 서식 ⇨ 사업별 공제서식 ⇨ 시민안전공제
 - 인천광역시청(www.incheon.go.kr) ⇨ 분야별-재난·안전 ⇨ 새소식(2024년 시민안전보험 안내)

☑️ **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?**

- ▶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인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며,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
- ▶ 보험기간 중 해당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
※ 사망보장은 만15세 이상, 후유장애 보장은 전연령,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이하

☑️ **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?**

- ▶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지급
※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, 사망은 법정상속인 가능
※ 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) 문의 및 상담

☑️ **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?**

- ▶ 개인보험 등 타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 가능
※ 단, 보험업법 제9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항에 중복지급 불가한 보험상품이 있음

☑️ **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?**

- ▶ 상법 제732조(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)에 따라 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

☑️ **인천시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?**

- ▶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보장 가능

☑️ **자연재해사망(일사병, 열사병포함)이란?**

- ▶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'자연재난' 및 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
※ 단, 동법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

☑️ **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란?**

- ▶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
- ▶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, 침강 또는 사태사고
※ 사태란 신이나 인력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

☑️ **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란?**

- ▶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
- ▶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탑승목적으로 승·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
- ▶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
※ 대중교통수단 : 여객수송용 선박 및 항공기, 지하철, 전철, 기차, 시내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(전세버스 제외), 일반택시, 개인택시(렌트카 제외)

☑️ **강도에 대한 정의**

- ▶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,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~336조를 따르며,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~제339조에 규정

☑️ **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**

- ▶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(단,1급~5급)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

☑️ **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란? ('21년부터 보장)**

- ▶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
- ▶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·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
- ▶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

☑️ **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('22년부터 보장)**

- ▶ 들개, 유기견, 반려견 등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지급
※ 응급실 정의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(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 의료센터, 전문응급 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 응급의료기관)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(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)에서 정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 의료시설

☑️ **사회재난 사망이란? ('23년부터 보장)**

- ▶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'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
- ▶ '사회재난(감염병제외)'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(재난상황의 보고 등)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
※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(재난상황의 보고 대상) 목록 참조
- 산불, 화재·붕괴·폭발,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(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)의 재난, 수질오염 사고, 유선·도선의 충돌 및 좌초, 그 밖의 사고, 화학사고 등)



2024 인천시민 안전보험

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☎ 1577-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 ☎ (032)120